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2003. 5. 29 제정 Established on May 29, 2003  
2009. 5. 4 개정 Amended on May 4, 2009  
2014. 4. 1 개정 Amended on April 1, 2014  
2015. 12. 1 개정 Amended on December 1, 2015  
2018. 12. 27 개정 Amended on December 27, 2018  
2019. 09. 27 개정 (Amended) on September 27, 2019  
2020. 12. 24 개정 (Amended) on December 24, 2020  
2022. 04. 01 개정 (Amended) 주식운용부문 주식리서치본부  
2026. 03. 10 개정 (Amended) 주식운용부문 ESG리서치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지침은 NH-Amundi자산운용주식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다.

### 제 2 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 2 장 행사기준

### 제 3 조 (행사여부 등)

- ① 회사는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 (행사방향)

-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펀드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탁자 책임 수행을 통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영업과 투자활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
  3. 주요 의사 결정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4. ESG 요인(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 ② 제4조 제1항에 따르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은 별첨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중립적 투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펀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함)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령 제 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 당해 펀드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펀드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및 정관변경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할 경우 펀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한도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6 조 (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7 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 장 행사방법

### 제 8 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제 9 조 (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 10 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11 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펀드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 4 장 행사절차

### 제 12 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의사결정) (2026. 03. 10 개정)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의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이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하 해당 안건을 “일반안건”이라 한다)
  2.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이 의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하 해당 안건을 “주요안건”이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요안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 결과를 대표 이사에게 사후 보고한다.

### 제 13조의 2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26. 03. 10 개정)

- ① 회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식운용부문장, 주식운용본부장, 주식리서치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식운용부문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ESG리서치팀장이 담당하며, 주식운용부문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간사와 추가로 참석한 직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③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의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주식리서치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부재중이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중 직급이 높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동급일 경우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1. “일반안건”은 서면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2. “주요안건”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 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수단을 통해 참여한 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14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2026 03. 10 개정)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5 장 공 시 등

#### 제 15 조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 제 16 조 (공시 및 보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에 따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 17 조 (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18 조 (내부통제)

의결권행사업무의 담당자는 제13조 제1항의 승인요청시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별첨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결재자 및 준법감시인은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별첨]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